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계약기간]

①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 당해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경,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에 있다. 또한 계약을 함으로써 서비스의 제공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급여제공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서 체결을 통한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이용계약]

①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이용보험법에 따라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본인 혹은 보호자와 한다.
② 서비스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서)
③ 표준약관계약서(방문요양)는 계약기간, 급여종류 및 범위, 급여비용, 계약의 해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 표준약관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동의서도 함께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 장기요양 수가변경 및 본인부담금 변경시 내용을 첨부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월 이용료]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원)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비율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 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
		9%	보험료감경대상자(순위25%초과 50%이하인자)-40%감경자
		6%	의료급여자,차상위감경대상자,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보험료감경대상자(순위25%이하인자)-60%감경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방문시간당 본인부담금

방문당시간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6%	9%	15%
30분	16,630원	1,010원	1,520원	2,540원
60분	24,120원	1,470원	2,210원	3,680원
90분	32,510원	1,980원	2,980원	4,960원
120분	41,380원	2,530원	3,790원	6,320원
150분	48,250원	2,950원	4,420원	7,370원
180분	54,320원	3,320원	4,980원	8,300원
210분	60,530원	3,700원	5,550원	9,250원
240분	66,770원	4,080원	6,120원	10,200원

①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을 기본으로 익월 15일까지 납부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기관 계좌에 송금할 수 있다.
②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혜택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센터에 본인 부담금 확인서 요청을 할 경우 연말정산 서류를 발급한다.
③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필요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수급자(보호자)의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나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 납부를 아니 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센터 서비스 제공 기간 내에서 센터 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 기간 내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① 수급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기관 또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②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면 혹은 전화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③ 계약해지일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를 기관의 계좌로 30일 이내에 지불한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